

2022학년도 교직 적인성 검사 실시 계획(안)

I 근거 및 목적

-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「별표1」(무시험검정 합격기준)

※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

-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
 - ▶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: 적격판정 1회 이상
 - ▶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: 적격판정 2회 이상

- 단계별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고,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

II 실시 개요

- 실시 대상

- * 1학기 - 2022년도 8월 졸업대상자 (대학원 교직 이수자 및 수료자 포함)
 - 학부 7학기, 대학원 교직이수자 중 3학기에 재학 중인 자
 - 2020학번 교직과정 설치대학 이수 확정자 전원
 - 사범대학 2학년 재학생 전원
 - 교직이수예정자(사범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 포함) 중 1회 차 검사 미실시자
- * 2학기 - 2023도 2월 졸업대상자 (대학원 교직 이수자 및 수료자 포함)
 - 학부 7학기, 대학원 교직이수자 중 3학기에 재학 중인 자
 - 교직이수예정자(사범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 포함) 중 1회 차 검사 미실시자

- 검사 신청 방법

- * 1학기 - ~ 2022. 03. 18.(금) 18:00 까지

* 2학기 - 2022. 09. 01.(수) 09:00 ~ 2022. 09. 23.(금) 18:00

- 포털 사이트(마이스누) ⇒ 학사정보 ⇒ 교직/교육인증 ⇒ 교직 ⇒ 인적성검사 신청

※ 직전 학기 합격자는 신청 불가

○ 실시 방법

- 포털 사이트(마이스누) ⇒ 학사정보 ⇒ 교직/교육인증 ⇒ 교직 ⇒ 인적성검사 평가
- 전공별 실시

○ 실시 장소

- 온라인 검사가 가능한 전산실 (10-1동 107호, 10-1동 311호)
- 온라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전에 컴퓨터 점검

○ 피검자수 : 15명 내외

- 초과할 경우에는 분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, 전반적인 실시는 검사자의 책임 하에 있음.

○ 검사 소요시간 : 40분 이내

Ⅲ 추진일정

○ 1 학기

월	3월	4월	5월	6월
○ 검사 신청				
○ 검사 실시				
○ 결과 발표				
○ 추가교육 및 결과보고서 제출				

○ 2 학기

월	9월	10월	11월	12월
○ 검사 신청				
○ 검사 실시				
○ 결과 발표				
○ 추가교육 및 결과보고서 제출				

IV 부적합자 처리

- 판별기준: 교직기초요인의 답변이 최악 및 차악 4개 이상인 경우 부적합 처리
- 부적합자 후속조치
 - 학과에 명단 전달
 - 지도교수 1차 면담
 - 정성평가
 - 지도교수 2차 면담
 - 학과장 결과보고서 제출

V 유의사항

- 검사를 미 실시하게 되면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, 사범대학 학부생의 경우 졸업도 불가함
- 검사 지원자는 검사 장소에 시간을 엄수하여 입실 완료하여야 함
- 교육 당일 **학생증을 반드시 지참**하여야 함
- 검사 횟수의 **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**으로 함(연속학기 불가)
부득이하게 연속학기 검사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아 공문으로 신청

VI 행정사항

-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운영 :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원양성지원센터
- 관련 기타 사항 문의처 : 02-880-4245

[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안내사항]

○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「별표1」 (무시험검정 합격기준)

※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

-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

.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: 적격판정 1회 이상				
.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: 적격판정 2회 이상				
대상자	교원양성과정	4년제	교육대학원	
			5학기제이상	4학기제
2013.3.1 이후 입학자		2	2	1
2013년 이전 입학자(복학자 포함)		1	1	1

○ 검사 신청 시기

구분	1차	2차
사범대학	1, 2학년	3, 4학년
교직과정	3학년 교직과정 선발 확정 후	4학년
대학원	3학기 이후	-

○ 판결기준 : 교직기초요인 최약 및 차약 4개 이상 부적합

○ 부적합자 후속조치

- 학과에 명단 전달 ⇒ ■ 지도교수 1차 면담 ⇒ ■ 정성평가 ⇒ ■ 지도교수 2차 면담 ⇒ ■ 학과장 결과보고서 제출

확 인 서

소속	학번	이름
졸업 예정 학기	검사실시 예정학기	
	1회차	(예) 2020.1 기이수 2회차

상기 위인은 무시험검정과 관련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**학년도별 1회(연속학기 불가) 기준으로 졸업 전 회 이상 받아야** 함을 _____에게 안내 받았으며,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졸업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.

위 본인 : (서명)